



일시: 2017년 12월 11일(월) 오후4시-7시
장소: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공동주최:

언니네트웍스, 정치하는 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후원: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사회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개회사 -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발제

1. 여성,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p.1
 2. 아동권, 부모권, 돌봄권을 아우르는 성평등 개헌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p.4
 3. 나는 여성이 아닌가?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나기, 더지 (언니네트웍스) p.9
 4. 혼인과 가족 & 돌봄 민주주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p.16
 5. 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대표) p.23
 6. 여성이 쓰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10차 개헌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p.31
- <여성이 세상을 연다_성평등開헌> 선언문 p.45

카드뉴스

- 헌법 15조를 신설하라
- 대성공 캠페인

여성,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1960~80년대 보건사회부 주도의 산아제한 정책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등 인상적인 캠페인 슬로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동네마다 “루우프 피임법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소나 가족계획 지도원을 찾”으라는 안내 포스터가 붙었다. 이 ‘지도원’들은 불임·피임시술 목표량을 할당받아 시술을 유도했다. 불임시술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거나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적극적 혜택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의 주된 대상은 여성이었다. 해외 원조로 들어 온 피임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무리한 피임시술, 또는 피임의 일종으로 행해진 임신중절 시술 후 장기간에 걸쳐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출산율은 급강하했다. 한국의 산아제한은 ‘성공적’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될 당시 법의 주요한 목적으로 고려된 것도 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만듦으로써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정한 조항에 더하여, 의사가 특정 질환의 유전이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그 발견을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불임시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75년 시설에 수용된 지적장애인 여아들에 대한 강제불임 시술 명령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출산 억제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국가적 위기(라던 인구 예측)의 양상이 정반대로 달라졌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정부 정책의 긴급한 목표가 되었다. ‘생명존중’ 캠페인을 비롯하여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십여 년 간 공공연하고 대대적으로 자행된 ‘여아 낙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던 국가였다. 이제 다시 ‘외동은 이기적이다, 외롭다’는 슬로건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했다. 급기야 공무원 단체미팅을 주선하거나 정부 부처 집무실에 ‘부서 내 미혼자 현황판’을 거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저출산 해결만 제 목 앞에 붙으면 사업 추진이 쉬워졌다. 일·가정 양립, 공보육 확대, 임신부 지원 관련 많은 정책이 그렇게 동력을 얻었다. 문제는 인구였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1995년까지 성폭력에 대한 형법 제 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였던 것이 떠오른다.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법·정책의 효과로서 고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국이다. 얼마 전 ‘여성의 성·보건 인권을 위한 조치’를 보고하라는 CEDAW의 요구에 한국 정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책만을 나열했다.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 여성 개개인의 안녕은 국가적 관심사-공익-의 범위가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을 내세우지 않고는 앞을 자리도 없는 현실이다. 출산하지 않을 여성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슬로건이나 임신중절을 처벌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회가 오래도록 지지해 온 제도적 합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의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라넷, 몰카, 낙태죄, 생리대 안전성... 많은 여성들은 이것이 그저 음모론이나 피해의식이 아닌, 합리적 의심임을 알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필요한 시책들은 웬만하면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할 거라는 것. 지독히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어머니’나 ‘딸’이 아닌 여성들 개인의 권리 자체가 공공의 관심사이자 ‘법’의 제정 목적일 수 없었던 역사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가임기여성지도’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생긴 이래 정권을 막론하고 고수해 온 여성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고, ‘나는 자궁이 아니다’라고 분노하는 수천 명의 여성 개인들을 새롭게 맞닥뜨렸다. 2016년 10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사 처벌 강화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임신중절이 불법화된 현실에 분노하며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고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발표했던 국정개혁과제에도 낙태죄 폐지는 빠진 채 저출산 극복 대책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온라인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여 다시금 낙태죄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 이슈가 어떤 가치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가 목표일까?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내 몸/자궁은 나의 것’,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라는 주장은 유효하고 중요하다. 나의 몸과 삶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지켜져야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이 이 슬로건으로 수렴된다면, 그때의 지향점이란 결국 각자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다양한 개인들의 세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구의 선택지가 더 넓은가는 문제시되지 않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억제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세상이 실현되진 않는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최대한의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출산의 도구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한, 여성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에게 임신, 출산, 성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인권운동의 진전은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고, 이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여부, 언제,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위한 의료 접근권, 정보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낙태죄 폐지 운동은 ‘재생산권’을 넘어 전반적인 ‘재생산 정의’,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겐 개헌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현행 조문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여성의 신체를 인구생산/통제의 도구로써 관리하고자 했던 권위주의 국가의 유산이다. 이 조항의 개정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개헌안에 포함되

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주체로서 존엄할 권리와 재생산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 10조(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다양한 권리를 다 포괄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보편적 인권 개념 안에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포함되어 사고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치를 개정안 조문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함에 있어, 우선 성에 관한 권리를 개념화한 유의미한 단어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별 및 여러 맥락에 따른 권력구조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두 성인의 권리 충돌을 가정하는 남성의 성폭력의 옹호에 오용되어 온 맥락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된다. 헌법에는 성적 존엄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나올 것 같다.

또한 성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도구화되거나 원치 않는 행위 및 상황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서 더 나아가 누구나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 본인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성적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정의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자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특히 장애인이나 청소년(과 일부 여성들)이 성적인 존재(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효하다.

재생산권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임신·출산을 ‘정상적인’ 여성 삶의 경로로서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신·출산을 하는 경우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낳지 않을 권리’까지 분명히 포함하는 조문이었으면 한다. 제시되었던 안 중에서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는 포괄적이지만 모호하고, ‘자녀의 유무, 수, 터울 등을 결정할 권리’는 구체적이긴 하지만 한정적이다.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권리’로 쓰되, 이는 사실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재생산권 전반-임신·출산을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고려하게 될 정보, 양육 지원, 양질의 의료 기술과 제도 등을 성별, 계층,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므로,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어서 사회구성원에 쉽게 다가가야 할 헌법에 쓰는 것이 적절할지도 고민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쓰이는 단어이며 대체할 다른 용어가 부재하니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밀고 가야 하는 것인가 싶다.

아동권, 부모권, 돌봄권을 아우르는 성평등 개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사람답게 자랄 권리 : 아동권의 명문화 필요성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5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같은 해 방정환 재단이 측정한 UNICEF 행복지수 모델 기준 주관적 행복도(주관적 건강, 개인행복, 학교생활 등) 역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해당하고, ‘고의적 자해(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란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고, 그나마의 성과들은 건강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 보육·교육·인성 전반에 관한 ‘발달권’, 안전·유해환경·학대로부터의 ‘보호권’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권리 행사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헌장의 꽃이자 핵심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제도적 견인은 사실상 부재하다. 현행 헌법 상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의무(제34조 4항), 특별한 보호대상으로서의 연소자의 근로(제32조 5항) 정도에 한해 아동의 권리 보장이 기술돼 있지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아동권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¹⁾. 반면 유럽연합 및 스위스의 경우²⁾, (스위스 헌법 제 11조) “아동과 청소년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성장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과 청소년은 그 판단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헌법조약안 제 II-84조)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견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인간관계 및 직접적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권 관련 조항을 헌법에 기술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아동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비한 아동권의 법적 근거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정서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이 질이 이렇게 열악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아동권을 보호받기는 커녕, 너무나도 쉽게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다.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이며, 진정의 대상이 된 해당 식당이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발표한 이유로 더욱 이슈가 된 노키즈존 논란은 합리적인 토론과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도, 맘충 논란과 맥락을 같이 하며 차별과 혐오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엄마는 엄마란 이유만으로 맘충으로 전락하고, 아이는 손쉽게 민폐 존재가 되고 만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국가 공동체의 존속 역시 이러

1) 2008.09.08. 일다, “아동은 ‘반인분’ 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박선영)
<http://blogs.ildaro.com/43>

2) 2008.09.08. 일다, “아동은 ‘반인분’ 아닌 완전한 사회구성원” (개헌④ 헌법에 아동의 권리 명문화해야, 박선영)
<http://blogs.ildaro.com/43>

한 상호 돌봄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요구와 양육의 필요는 민폐적인 것이 되었고, 돌봄의 국가적 책임마저 각 가정 내 여성(그 중에서도 주로 생물학적 엄마)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등권 강화 원칙에 기반해 아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헌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 기본권 본과의 노력이 무척이나 반갑다. 제 10차 헌법 개정 시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따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 이익 우선적 고려 의무를 명시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³⁾함으로써 아무쪼록 ‘우리의 아이들’이 사람답게 자랄 권리를 보장 받고, 한 사람의 오롯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법적 토대가 강화되기를 요구한다.

아동권과 부모권, 그 불가분의 관계

성평등의 관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아동권의 관점에서만 조명하더라도, ‘노동에서의 성평 등 및 일·생활 균형 보장’은 이번 개헌 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아동의 권리 보장은 상당부분 모부성 보호에 의존하고, 모부성 이슈는 결국 양육자의 노동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아동권과 부모권이 불가분에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도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와 같은 문구로의 ‘임신·출산·양육의 국가지원 의무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화’ 조항 삽입이 필수적이다. ‘모성의 보호’에서 ‘출산·양육 지원’으로의 프레임 전환은 생계 부양 및 돌봄 노동의 책임을 부모 양자에게 균형 있게 분배하고,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여성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여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개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국가보육책임제와 같은 구호 아래, 민간 시장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쉬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급조된 무상보육 정책은 누리 과정 예산 파동, 맞춤형 보육 논란 등을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고, 취업모와 전업모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겼다. 무상 보육의 도입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정작 아동학계 관계자들은 현 보육 실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시기상의 특성상 면밀하고도 집중적인 1대 1 양육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현 무상보육 하에서는 상당 수 아이들이 이른 영아 시기부터 기관 내 집단 보육에 장시간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보육 시간을 12시간씩 늘려주는 방식’보다도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가능토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임신·출산·양육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차별적 요소는 ‘비자발적 경력 단절’인데 가장 큰 원인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취업모를 위한 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대도, 공공성·투명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공보육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직장에 근무한다고 치더라도 출퇴근 시간 포함해 평균 10시간 이상 아이를 보육 기관 등에 위탁해야 하기 때

3) 성평등헌법 릴레이토론회 1차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자료집 참고, 67p (한국여성정치연구소·서울 YWCA 주최)

문예, 결국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남성부양자에 비해 승진의 기회는 적고 퇴직의 위험은 높은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엄마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출산·육아 휴직조차 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종용 받는다.

성일종 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의견을 한번 낸 것 같은데, 지금 뒤의 문항을 보면 공직사회 진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묻는 항목으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우리 국가의 틀을 담아갈 것인데 이미 평등이 여성에 대한 것들은 공직사회나 또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 봐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여성비율이 높은 데도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20~30 년 뒤에 이 문제를 한번 봤었을 때 ‘그 당시 왜 이런 것을 넣었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미 기존 법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나,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위법에서 더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전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의 가치에도 충분히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 특히 일반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실력으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 이런 분야 같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것이 사법고시나 또 국립외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우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 의견 수렴용 설문. 12번 성평등에 관한 내용 관련 위원 토의 내용>4)

개헌특위 위원들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대한민국 엄마들은 둘 중 한 명 정도가 첫 아이 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여성 대학진학률(76.4%)이 남학생(67.3%)보다 높고, 공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이 43.9%⁵⁾까지 올라서 여풍 기획 보도들을 손쉽게 접하는 이 시대에도 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여성 비중은 44.6%에 달한다.⁶⁾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임신·출산기를 겪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구분 없이 출산·육아휴직을 의무화함으로써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데 뒤야한다. 일례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 33조 ②와 같이 “모든 사람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모성을 이유로 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후 유급의 출산휴가 또는 양육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출생 및 양육 지원”의 의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와 병행하여 아동권·부모권·노동권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보장되도록 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성평등헌법 릴레이토론회 1차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자료집 참고, 39p (한국여성정치연구소·서울 YWCA 주최)

5)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15.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첫째 아이 출산 시 경력단절 경험률, (전체평균 44.6%, 공무원 11.1%, 민간기업 종사자 49.8%, 비정규직 노동자 71.1%), 2016.

돌봄과 살림의 책임, 누구의 것인가?

마지막으로, 돌봄권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마치려한다. 유급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용 중심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가부장적 문화와 맞물려 돌봄과 살림을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정도의 일로 폄하한다. 가정 및 사회 속에서 성평등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선결돼야 한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발족한 단체로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여성연합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중 제 119조 ①의 개정안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유급·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포괄하며 자연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경제주체간의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돌봄권 신설 제안(“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⁷⁾)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보다 자세한 견해는 단체의 정관 전문 내용으로 갈음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7) 여성연합 성평등 개헌 TF 4차 회의록, 13p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1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집행된 정부 예산만 100조가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을 통한 인구절벽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예견됐지만 속수무책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분류됐던 시간들 역시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여성들의 출산을 국가 주도적 관점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저출산 탈출이야말로 성평등한 사회 건설 없이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끊임없이 혐오와 차별을 양산해내는 성평등 개헌 반대 세력을 넘어 성평등한 헌법적 토대 위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책이 될 거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5조를 신설하라!

- ①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가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 ③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④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나는 여성이 아닌가?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나기, 더지 (언니네트워크)

‘성평등 개헌’은 지난 30년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라 인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때문에 유보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에 반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목소리들의 좌표를 찍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는 지속적으로 ‘최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소수의 문제’로 환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그 다음의 개헌 국면에서도 말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성평등 개헌’에 참여하여 여성-성소수자의 관점에서 성평등 제도의 도약을 위해 목소리 내려고 합니다.

1. 언니네트워크는?

2004년 11월 27일에 그 첫 불을 지핀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언니’라는 단어는 여성들 사이에서 친근하고 편안하게 불리어지며 또한 자매애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언니’와 ‘네트워크’의 합성어로, 여성들의 연대, 지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의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中)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핵심은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성정체성, 피부색, 경제적 계급, 나이 등의 차이는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조건이 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언니네트워크는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며 무한히 스스로를 연결하는 차이들 간의 그물망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2. 여성이자 개인으로서 필요한 성평등 개헌

1999년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판결, 2001년 여성부 출범, 2005년 호주제 위헌 결정 등 성평등의 제도화 성과와 동시에 여성, 여성부, 여성운동, 페미니즘은 역차별, ‘된장녀’, ‘보슬아치’로 역풍을 맞이했습니다. 여성부는 탄생과 동시에 폐지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주장했던 <(구)남성연대>는 2014년 조국·가족·균형을 모토로 <양성평등연대>로 변모했고 그 정관에 ‘남녀의 조화로운 균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을 암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호주제 위헌 결정’ 이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을 바탕으로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순차적으로 편입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폐지, <남녀고용평등법>은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혼인, 친족, 양육, 노동의 재편을 원했던 ‘여성’의 투쟁은 그 제도화 성과와 함께 이성애적 공동체로 설정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몰두할 것을 약속받는 듯한

명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주여성, 미혼모 등 다양한 여성들의 삶 역시 출산과 돌봄 책임이라는 배경, 즉 인구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다뤄진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이 개인으로서 권리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놀랍게도 ‘평등 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성차별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야 ‘성차별 금지(제29조)’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입니다.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와 구제의 원칙은 구속력이 약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차별금지과 구제의 원칙을 강력하게 명시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36조1항은 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양성의 평등’을 기입한 여성운동의 기념비적 성과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성평등의 명문화는 훗날 호주제 위헌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참조됩니다. 그러나 몇 년 간 가족 가치를 수호하려는 보수기독교계가 이 조항을 열심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2차 세미나>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적 가족’의 관점에서”

즉,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과 ‘재생산’ 영역의 사회적 조치를 개선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의 노력은 오늘날 ‘가족 가치’를 수호하며 특정한 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고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 열의를 쏟지만 가족이 남녀라는 ‘양성’의 부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며 비혼모, 한부모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족’(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을 당연히 하는)이 아닌 **개인으로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한 조합이자 공동체로서 ‘가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가족제도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로 배치되고 그것이 신분으로 확인됩니다. 성소수자 또한 이러한 토대위에서 태어나고 배치되지만 법제도가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거나 시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구분 배치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불법’화하고 이러한 배치가 담고있는 이성애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비정상화하는 것이 한국의 법체계입니다. 오늘의 양성평등기본법이 슬프고 모욕적인 것은 입법, 실행과정에서 여성정책이 애초에 담당하고 목표로 해왔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구를 확인하고 확장하기보다 성을 둘러싼 정상성과 위계를 공고히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담론과 권력이 이 법을 매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015.11.27. 대토론회 : 양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中

3.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 여성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일반적 차별금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개헌이 여성성소수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시는 2015년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성평등 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항의해 <여성성소수자결기대회 :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이상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서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이미 한부모 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위한 국가의 복지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소수자가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국민으로 볼 정당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이 일반적인 인권 원칙과 별개인 것으로, 인권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금의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2017.12.04. jtbc <뉴스룸> 보도 '양성평등→성평등' 바꾸려 하자...일부 기독교계 반발

지난 이틀 사이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게시판에 성평등 반대라는 내용의 글이 600여 개나 올라왔습니다. 일부 기독교계 인사가 포함된 동성애 반대 단체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입니다. 1차 계획에서는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와 '양성평등위원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이걸 '함께하는 성평등'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게 반대 단체들의 시각입니다.

- 이경희/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사무국장 : ‘성모든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다뤄야될 사안이 아닙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 : 양성평등, 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4. 양성평등 vs 성평등

‘양성평등’이 그 명칭때문에 ‘성평등’과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입법과정에서 성 소수자를 배제하려는 단서에 의해 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을 둘러싼 지난 19대 국회의 논의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322회 2차 회의록 中

(발제·강조 : 2015.11.27. 대토론회 :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진술인 김용화(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은 법적·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성평등은 사회적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성별 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의 어떤 선도적 기능에 따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정의하여 사용한다면 커다란 모순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헌법을 비롯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념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사회적 지지를 받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모두 여성의 상향식 평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실제 여성의 권익회복 또는 향상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저항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 내용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명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에 따른 사안이기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헌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은 도출할 수 있지만 성평등 이념을 도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조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중략) 이미 개정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통계,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양성에 대한 다름을 차이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1.2의 정의규정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것이 여성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 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평등의 기준에 대한 반론은 별개로 현재 남성의 수준까지 여성의 제반 권리를 상승시키는 평등한 권리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평등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양성평등의 이념의 실현이 오히려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법적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 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위헌 요소도 있나요?

<진술인 김용화>

위헌 요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하위법,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데피니션(definition)을 법리적으로 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헌법에서 말하는 성별이나 양성평등의 부분은 성으로 해석한다는 부분을 데피니션에 단다고 하면 위헌 소지는 없겠지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3의 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법이 그렇게 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법리적인 대상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은 일반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진술인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성평등은 저는 아직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여성 뚜렷하게 양성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36조1항에도 있듯이 가족의 중요성 또 혼인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평등법 이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때가 오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법 제명으로 양성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예요.

<진술인 장명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법명은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 부분인데요. 헌법상의 11조하고 36조를 보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훨씬 더 나왔더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제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2005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 때도 이것을 성평등으로 하나, 양성평등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영어를 쓰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떼지 않는 한 이것이 성평등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양성평등이 낫다, 아마 미래적으로는 성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보면 법안의 제명 문제가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박진경 진술인만 성평등법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그 안에는 제3의 성을 성평등

이라고 할 때 포함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박진경 진술인을 제외하고 세 분은 법안 제명에 나와 있는 성평등법이라고 할 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법안에는 성인지, 성주류화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도 그 용어가 생물학적인 성의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명선 연구원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진술인 장명선>

사실은 제가 법명에 대해서 거기 내용에 썼듯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상에서 11조하고 36조가 양성평등으로 ‘남녀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아까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상관없이 성평등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성 관련 법률들이 사실 법률 입법이라는 것이 통과돼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게 2005년에도 성평등법이나 양성평등법이나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제가 2005년에 연구를 했을 때 여가부에 가 가지고 이것을 논했을 때 여성부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한 성평등으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여가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 Family)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평등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갖는 어떠한 형태라든가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서 가는 게 낫고, 지금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헌법상에도,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헌법을 뛰어넘어서 성평등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만약에 진술인께서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성평등기본법의 제명의 의미가 제3의 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된다면 이 성평등기본법안의 각 조항에 제3의 성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가 평등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보면 평등권 침해 규정과 관련해서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2조3항을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그리고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성별하고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평등기본법의 제명에서 성의 개념에다가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술인 박진경(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성적 정체성은 말 그대로 본인이 본인의 성에 대한 자기정체성이잖아요. 그런다 했을 때 성적 지향 문제는 성 정체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 이게 성적 지향이잖아요. 본인은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의 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성적 지향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평등에서 이야기하는 젠더는 그 안에 성적 지향의 차이를 염두하고 두려는 법률 용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서 만들어진 성별영향분석법,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많은 성주류화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성이라는 개념은 명백히 젠더의 개념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성을 의미하고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어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당연히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바라고 보여집니다.

<전정희 위원>

우리나라가 이미 1995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섹슈얼 이퀄리티에서 젠더 이퀄리티로 바꾸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부의 영문 표기명도 젠더 이퀄리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젠더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양성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개념을 이 법의 제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시대의 트렌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성소수자는 성평등과는 관련 있지만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는 입법자·전문가들의 판단은 처참합니다. 젠더는 인간을 반드시 남성 또는 여성에 속하는 개인들로 분류하는 체제입니다. '젠더 체제'는 그 개인들이 각 성별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남녀 간에만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별 고정관념 속에서 삶의 불화와 차별을 겪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평등 법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과 가족 & 돌봄 민주주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혼인과 가족

□ 현행 헌법 조항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에서 (헌법의) 혼인과 가족 조항이 미치는 영향

-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함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출처 : e-나라지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혈연가구수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13,694
핵가족(%)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20.6	21.8
	부부와 미혼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49.4	44.9
	편부모와 미혼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0	12.3	15.0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1.1
	부부와 양(친)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5.0	4.2
기타가족(%)		9.7	17.9	16.1	14.0	13.8	11.2	10.1	10.4	11.6	13.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석

* 2015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

• 국가 정책에서의 배제

- 사회적 편견 조장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이 담보 되어야
- 국제적 규약의 이행 명시되어야 함.
 -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 등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가로 막는 “정상 가족이데올로기”의 오작동

2016년 4월 어느 날 나는 열아홉 살 때부터 지속된 형부의 성폭력으로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아이를 살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2016년 4월 5일). 아픈 언니와 조카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이모이자, 처제이자, 엄마인 이 여성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별거 중인 아내를 불러내 지하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편이 아내를 불러낸 명분이 '면접교섭권'이었다는 기사도 접한다(2015년 3월 28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자녀'였다.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이기에 앞서 아버지인 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가족을 지키려는' 법의 의지 앞에 가정폭력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덕분에 이혼과정에서 살해되는 여성들이 꾸준히 발생한다.

2015년 12월에도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아내와 아이를 불러내 둘 다 살해했다. 죽어가는 이들 앞에서 연거푸 묻는 질문이 있다. 법이 지키려는 '가족'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잃을 바에는 같이 죽거나 죽인다는 이 아버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2016년 3월에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10월에는 50대 가장이 딸기 암 아내와 특목고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10년 전 미국 LA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아내와 두 자녀에게 총격을 가하고 자살한 아버지와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딸의 이야기는 2016년 4월 LA타임스 기사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살아남은 이를 보며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살아남은 딸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주어를 생략하고, 삶의 맥락을 삭제한 채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할수록 가족은 점점 박제가 되어간다. 설 곳과 기댈 곳을 찾는 무수한 이들을 보며 누군가는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당연하듯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빼곡하게(그리고 덕지덕지) 규범으로 채운 세계에서 '가족'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안식'이라는 걸 준다.

이때의 안식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처제를 강간하는 형부에게, 그리고 폭력에 저항하기보다 '인내'를 선택한 아내를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남편에게만 도달할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접고 저항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녀와 '가족'을 책임지려는 '처제'와 '아내'에게 가족은 안식처일 수 없다. (한국여성언론전화 화요논평 20160510, 원문: 김홍미리)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비롯해 국가 가정폭력방지정책을 관통하는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라는 목적과 규범은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주문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등 가정폭력 근절을 막는 핵심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

•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법 적용 및 관용

-2017년 7월 25일 밤 11시 25분경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부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며, “사흘 전 부부싸움 중 뜨거운 물을 뿌려 아내가 다쳤다”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자정께 경찰에 신고함. 그러나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남편의 말만 듣고 사건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철수함. 해당 가정은 2015년 7월 2회, 2016년 8월 1회 등 총 3회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었음.

[2017.8.10. 연합뉴스- “‘구급대가 가정폭력 신고했는데’...가해 남편 말만 믿은 경찰”]

-2017년 9월 10일 오후 4시경 경북 경주시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십여 차례 내려친 남편이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음. 가해자인 남편은 두 달 전인 7월에도 집안 집기를 부수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바 있으나,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당시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라기보다 재물손괴에 가까웠다”, “가정폭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정폭력 재발우려 기준에 못 미쳐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함.

[2017.9.15. 노컷뉴스- “돌로 머리 내려치고 폭행했는데...가정 폭력 아니다?”]

- 가정폭력 신고율: 2013년(1.3%)⁸⁾, 2016년(1.7%)⁹⁾

- 가정폭력사범 구속율: 2013년(1.7%), 2014년(1.6%), 2015년(1.3%), 2016년(0.9%)¹⁰⁾

• ‘헌법은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서 최고의 규범’, ‘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하위법률의 근간- (11조의 규정만으로는 한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 개정운동 진행 중

○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방조함.

• 「‘gender equality’의 의미는 성별/ 들 간의 평등이거나 성별 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을 뜻하는 것이지, 양성간의 평등이 아니다. (정희진)」

•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를 본질화하며 성역할고정관념을 재생산·강화하거나 물성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반인권세력의 목소리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운운하며 반인권적 성차별적 주장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성소수자 배제를 공표하며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전반을 후퇴시킴

• 여성을 보호의 대상과 객체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 -주체, 시민으로서의 여성

“여성폭력은 차별의 한 형태로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본질적인 원인은 남성과 여성간의 오랜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 모두에 만연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 “ - 유엔사무총장 심층보고서(The Secretary General's in-depth study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

8) 여성가족부(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9) 여성가족부(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10) 법무부, 2017 통계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의 본질적 원인은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고 제 2의 성, 혹은 열등한 그 무엇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임.

- 여성 2명 중 1명 가족이나 데이트 상대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전/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여성 10명 중 8명(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통계분석)

-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여성 최소 187명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

□ 개정방향 및 내용

• 여성연합 성평등 개헌 TF 논의(안)

①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③ 가족은 법적·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논의 중인 쟁점 (성평등 개헌 TF)

- 현행 조문 자체만 봤을 때는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제도보장’의 내용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도록, 즉 혼인이나 가족생활 상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 ‘가족 보호’와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가족제도’에 대한 국가보호의 측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개정안에서는 가족형태로 인한 차별은 평등권 조항에서, ‘모성보호’의 문제는 노동, 혼인 및 가족, 재생산의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은 노동영역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은 아동권에서 규정/담보하기로 했음. 이처럼 가족생활과 관련한 권리와 사회보장의 상당부분을 다른 영역으로 포괄하고, 조문의 위치도 사회적인 제도보장에서 자유권 부분으로 옮기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문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조문에서 상정한 ‘가족 보호’는 무엇인지, 민법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법의 근거규범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함.

- ‘혼인’을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은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후 토론이 필요함.

■ 돌봄 민주주의

인간은 평생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 하는 어린아이는 양육자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대어 돌봄을 받는다. 그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은 끊임없는 돌봄의 연속이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돌봄의 연속이다. 성인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과 다른 것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하느냐 와는 다른 문제이다- 의 차이일 뿐이다. 고령의 노인이 되면 다시 돌봄을 필요로 한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돌봄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낳자마자 한 시간 내에 걷고, 땀 수 있는 동물의 새끼에 비해 인간의 어린아이는 지나치게 나약하다. 동물은 학교라는 체계 속에서 집합 교육을 하지 않으며 거대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긴 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성체가 된다. 나이 들어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 하는 동물은 도태된다. 인간의 돌봄은 문명화 이후에 자연 상태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을 살 수 있게 하는 행위들이며, 많은 물건의 사용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가 구축한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의 토대이다. 돌봄없는 일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중요한 돌봄이지만 항상 핵심적인 공적 논쟁의 장에 등장한 일이 없다. 대부분 이러한 돌봄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들이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공적영역으로 진출하지 못한 돌봄은 그 가치가 저평가되었고, 숨겨진 그림자 노동이 되어 왔다. 전업주부를 ‘집에서 논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여성이 단지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수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겨 왔다. 한걸음 나아가 돌봄에 적합한 신체와 심성을 가졌고 본시 돌봄에 특화된 존재라는 신화를 끊임없이 재생산해 왔다. 여성들에게 지워진 돌봄 책임은 그 무게만큼 인정받지 못 했고 기록되지 못 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돌봄의 책임을 떠맡은 엄마들은 절규한다. 왜 아무도 신생아가 이렇듯 까다롭고 24시간 손이 가며 다루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돌봄 책임은 여성에게 보상과 인정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게 시민권을 박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로서 역할하려 할 때마다 뒷덜미를 잡아 찬 것은 바로 이 돌봄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사, 가족 돌봄으로 이어지는 돌봄의 1차 책임자로 설정되면서 장시간 노동과 야근과 회식을 감당할 수 없는 2등 노동자로 취급되고 있다. 20대 여성들조차 채용 면접자리에서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 계획)이라 불리는 질문 -얼마나 반복되었으면 합의된 약어까지 존재 하는가- 을 무수히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결국 이들은 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난생 처음 본 면접관으로부터 버릇없고 제멋대로라는 꾸지람을 듣고 배제된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안정적 기반을 확보한 능력 있는 노동자로 인식된다. 돌봄 책임의 불균형한 분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일도 하고 시민역할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누군가는 불공평하게 돌봄의 의무를 떠안고 있다면 민주주의 이론은 아직 그 임무를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¹¹⁾. 돌봄 책임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평등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논쟁을 가져온다. 돌봄과 민주주의가 결합되는 지점 또한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확대함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현재 돌봄이 가진 불평등성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11) 조안 C. 트론토, 2014,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81면

한편 돌봄을 책임으로만 인식하지만 돌봄은 양면성을 가진다. 책임의 다른 면은 돌봄을 할 권리이다. 내 아이를 돌볼 권리를 박탈당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당한다. 책임은 권리의 이면이다. 책임을 수행한 만큼 유대감과 가족 공동체 소속감은 증가한다. 그러나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또 놀러 와요”라고 말하는 광고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돌봄을 할 권리는 결국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이는 좀 더 확장된 논의를 불러온다. 회사에 매인 시간빈곤자는 돌봄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시간의 측면에서는 일·생활 균형 논의를 촉발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시간 단축,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등으로 확장된 논의를 가져온다.

돌봄은 또한 학습이 필요한 생존 기술이기도 하다. 독립하여 1인 가구로 생활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한 그릇조차 내 손으로 만들지 못 하는 현실은 취향을 떠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공부만 요구하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집안의 모든 돌봄을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있다. 분배되지 않은 돌봄은 생존 기술 습득 과정조차 박탈하고 있다. 이는 다시 교육과 문화의 문제로 확장된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볼 능력과 생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이들이 독립해 1인가구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앙드레 고르는 인간 활동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 임금을 얻기 위해 하는 타율노동, 개인 욕구와 일치하는 스스로 명령한 활동으로서의 자율노동, 그리고 생물학적인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노동으로 나눈다. 고르는 인간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율노동에 의한 식민지화에서 벗어나 자율노동시간을 늘리고 그로 인한 소득감소 등은 그동안 경제이성에 지배되었던 사적영역의 노동들을 다시 자활노동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젠더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또는 누구든지 자급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¹²⁾. 고르가 주장하는 자율노동과 자활노동의 능력 회복은 시장의존적 소비자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돌봄이 자활노동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앙드레 고르가 주장하는 젠더와 상관없는 자급 능력과 사적영역의 재탈환은 돌봄의 권리와 맥락적으로 닿아있다.

국가가 발전해 오면서 돌봄의 책무를 국가의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증가해 왔다. 영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을 통한 노인 돌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까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무도 이것이 가족 내 사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위법에서만 규정할 것인가.

트론토는 돌봄의 ‘무임승차권(passes)’을 경계하고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진보했음에도 현재의 민주주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이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의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 과제로 인식하지

12) 문순홍, 2001, 앙드레 고르:현대 자본주의 비판과 사적 영역의 재탈환 정치, 236-240면. 김현미, 2015, 자본주의의 ‘재생산적 전환’과 여성노동, 6-7면에서 재인용

못 하는 민주주의는 아직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주정치는 민주시민이 이러한 돌봄의 책임분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과 돌봄을 위한 책임 분담을 그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고 말한다¹³⁾.

헌법에서 돌봄의 권리와 평등한 책임을 말하는 것은 지금껏 사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던 돌봄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다시 시장화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돌봄 노동은 시장화되면서 사적영역에서 여성이 무임금으로 해 오던 노동이라는 이유로 심각하게 저평가받고 있다. 당장 우리 정부부터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돌봄 노동에 대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다.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렇듯 다양한 논의의 확장을 가져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진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이 명백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돌봄을 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는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며 자유와 평등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다.

13) 조안 C. 트론토, 2014,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7면

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대표)

1. 들어가며

○2016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백만을 넘음(2005년 대비 8.5%, 159,922명 증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9.26%의 증가율을 보임.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자격 신청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힘. 이러한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의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지속될 전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체류외국인 수 증가는 크게는 한국,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이주민이 늘어남을 의미함. 전체 외국인 중 75%가 정부에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고, 약 21만의 미등록 상태(불법체류) 외국인을 추가하면 그 수는 더 많음.

○한국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수립하는 한 편, 여전히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숙련,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책을 만들면서 동시에 내국인의 노동시장 보호한다는 명문 아래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취업을 단속하고 있음. 정부는 한국 사회의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미봉책으로 외국인 유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선언했지만, 그 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은 적극적이지 않음.

○전세계 난민이 6,560만 명을 뛰어 넘은 ‘난민위기’시대에 난민 수용 확대와 인권 보호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 난민 수용은 다른 배경의 이주민과 달리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가 목적이고 국가적 재생산 위기 해결책은 아닌바 한 국가가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호하느냐는 그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임.

○한국은 1992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음. 1993년에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했으나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난민의 처우에 관해서는 2008년 3번째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이에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시행됨.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난민인정자의 사회적 처우를 다루는 등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들. 최근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3년간 재정착난민 수용.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세계 평균 37%에 턱없이 모자란 3.9%(199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688명)에 그치고 있음. 또,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갭이 존재하며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해 부처간 간극이 있음.

○다문화 혐오, 인종주의,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 여론,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여론, 난민법 남용 증가에 대한 비판

2. 난민협약 상 난민의 정의와 법적 지위

○난민은 국제법상 우선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1966)과 더불어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 노동자권리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2006)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또한 난민의 지위에 따른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자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난민협약 제1조 A(2))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1)국적국 밖에 있을 것, 2)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중 하나 혹은 복수, 3)그러한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4)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5)국적국의 보호 부재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와 권리는 난민이 비호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았는지의 여부 혹은 어떤 종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음.

○난민협약이 보장하는 주요 권리는 자유권으로 종교의 자유, 결사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있음. 사회권으로는 주거권, 교육권, 공적 부조를 받을 권리,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저작권 등이 있음. 또한 난민은 추방 및 송환의 금지(제33조), 불법 입국 및 체제에 대한 형의 면제, 귀화 용이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음. 협약 상의 모든 사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함(제3조).

○난민협약은 절대적인 권리 외 각각의 권리의 보장의 수준을 국민 혹은 외국인과 비교하여 규정하고 있음.

- 1)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예-동산 부동산, 자영업, 자유업, 주거)
- 2)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한 것 중 가장 유리한 대우(예-결사의 권리, 취업)
- 3)내국인과 동일한 대우(예-재판을 받을 권리,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배급, 초등교육, 공적구호, 노동법과 사회보장)

<난민 및 외국인 관련법>

국제법	국제인권협약	세계인권선언(1948),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고문방지협약(1984), 아동권리협약(1989),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 장애인권리협약(2006)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 비준하지 않음. 사회권 협약 의정서(2008년 제정, 2013년 발효)에 비준하지 않음.
	난민협약	난민협약(1951), 난민의정서(1967)	1992년 비준
국내법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난민법	난민법(2012)	2009.5.25. 법률발의 2012.2.10. 제정 2013.7.1. 시행
	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주택법, 장애인복지법, 도로교통법, 모자보건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 출입국관리법(제76조의 8~10, 제64조 3항, 제99조 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외국인 관련 지방 자체단체 조례	•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2006, 행정자치부) •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산시,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산구, 목포시)	업데이트 필요

3. 국내법상 난민의 정의와 법적지위와 처우

1)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호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교육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주택법」 등 각종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배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주민은 귀화를 하지 않는 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 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시함(헌법재판소 1994.12.29. 선고 93헌마120결정,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 황필규(2010)).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인간의 권리”, 후자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 보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함. 다만 노동에 관한 권리 가운데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같이 아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는 외국인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결정. 황필규(2010))

○현실에서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헌법적 한계가 관련이 있음.

2)난민법

○난민법, 난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적용.

○국내 난민법상 분류: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2, F-2-4),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난민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로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에 따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 가족결합,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를 받음.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 난민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아동은 장애인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장애인등록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이 안 됨.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 가운데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함.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는 취업활동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음(제39조).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없음.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봄. 특히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과 운전면허증 획득 불가능은 큰 문제가 됨.

○난민신청자의 처우 관련해서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로 생계비 지원, 취업 허가, 주거시설 지

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에 관련됨. 그러나 모두 “~지원할 수 있다” “~ 허가할 수 있다”와 같은 의무 조항이 아님. 법무부 예산의 제약, 국내 노동시장의 폐해, 운영 중인 주거시설 이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외국인지원센터가 유일한 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은 매우 제한적. 제44조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심사 재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처우를 제한할 수 있음.

4. 난민보호 현안

- 난민지위인정(RSD) 절차 개선
- 독립적인 행정적 이의신청 제도가 되어야
-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지위 및 권리 개선
- 가족재결합 절차 마련 및 지원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개선. 특히 공항만 불회부 결정사유를 명백히 근거 없는 케이스에 국한
- 재정착 수용 확대 및 현지통합 위한 지자체와 부처간 협력 강화
- 재정착난민과 국내에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처우 및 지원
- 구금, 아동 구금
- 출생신고
- 교육권

5. 맺음

- 헌법적 한계, 사회권 보호 노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유기
- 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김포 난민지원조례 폐기(2015년)
- 성적 박해와 관련한 난민 사유, 여성난민의 취약성, 난민심사 및 보호 기관 젠더적 관점 필요
- 아동난민에 대한 보호 미비
- 체류외국인 수 급증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증가로 정부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펼침.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시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주민의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주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지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의무나 책임은 아님.

2016년 한국 난민 보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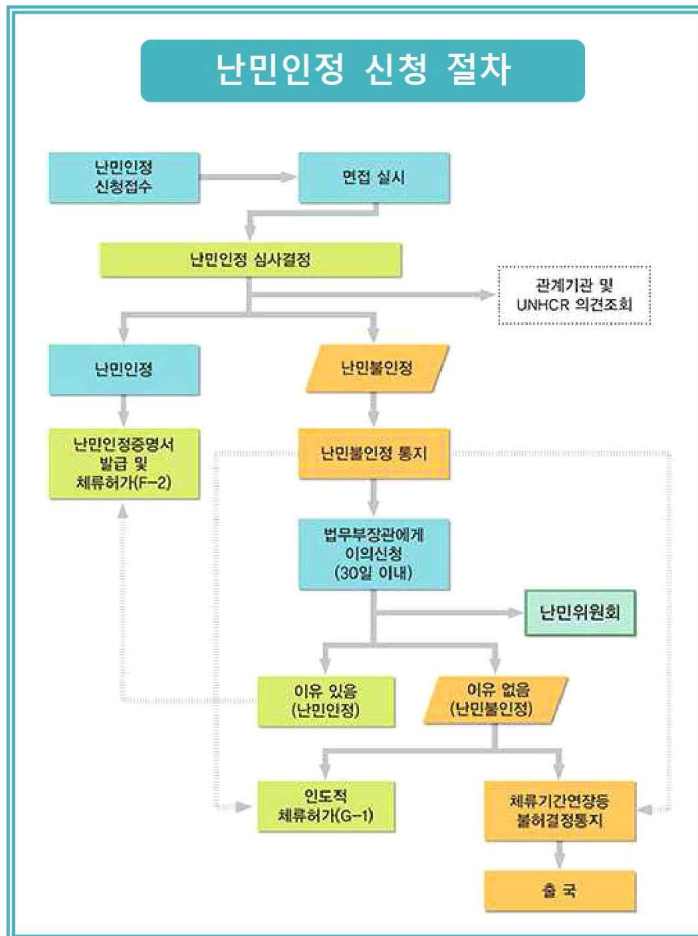
대한민국 난민 보호 연혁

- 1992년 한국, '51 난민협약과 '67 난민의정서 가입
- 1994년 난민신청 받기 시작
- 2001년 최초 난민 인정
- 2013년 7월1일 「난민법」 발효
- 2015년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 사업

한국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 : 난민

신청자는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 사무소 난민조사관의 심사, 난민위원회,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를 통해 난민인지의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는 생소한 행정절차 및 법제도, 언어장벽, 박해 경험/가능성과 공포의 입증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래 출처 : www.hikorea.go.kr>



난민인정자의 처우

: 필요한 경우 사회 보장기본법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 미성년자의 경우 의 무교육, 취업활동, 가족재결합 등.

난민신청자의 처우

: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받고 심사하여 생계비 지원, 난민지원시설의 주거시설 이용(※ 2016년 114명 입소) 미성년자의 경우 의 무교육, 신청 6개월 뒤 취업활동 허가.

□ 난민 신청 전체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명)

'94-'16 신청	철회	심사 중	심사 종료(13,393)					난민 보호율 (%)
			난민보호				불인정	
			난민 인정자	재정착 난민	인도적 체류자	소계		
22,792	2,538	6,861	616	56	1,156	1,828	11,565	13.6

※ 난민보호율 =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인도적 체류자/심사 종료자」

□ 2016년 난민심사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명)

2016년 신청	철회	심사 중	심사 종료(5,394)					난민 보호율 (%)
			난민보호				불인정	
			난민 인정자	재정착 난민	인도적 체류자	소계		
7,542	731	6,861	64	34	246	344	5,050	6.37

□ 2016년 난민인정절차 단계별 난민인정자 수

단계	1차	2차	소송	재정착	계	98건 중 가족재결합 난민	※ 가족재결합 : 난 민인정자로부터 한 국에 태어난 자녀, 고국의 배우자와 미 성년자인 자녀는 가 족재결합을 통해 난 민으로 인정받는다.
인원	51	10	3	34	98	34	

국적별 난민인정자



※ 재정착난민 프로그램 :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으로의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들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내에 수용.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3년의 시범기간 동안 미얀마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받고 있다.

국적별 인도적 체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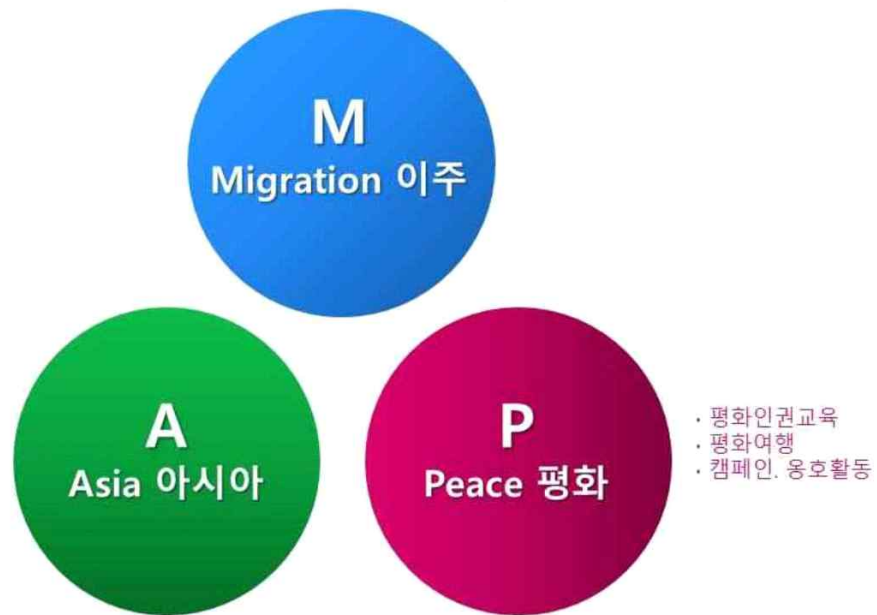


※ 인도적 체류자 :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출신국 내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자. 난민과 사회적 처우가 매우 다름. 예)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 시리아 난민.

MAP은
분쟁과 박해, 폭력으로 고향을 떠나온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비영리단체입니다.

- 난민사회통합사업
- 출입국 관련 상담
- 의료 연계 및 생활지원
- 난민공동체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지원

- 아시아 지역 귀환난민
마을 공동체 지원
- 아시아 난민 이슈



여성이 쓰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성평등 개헌

이진옥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0. 들어가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매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2016년 116위에서 2017년 118위로 다시 하락했다. 이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은 단 한 번도 100위권 안으로 진입한 적 없다. 이러한 성불평등 지수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과부화된 교육열,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의 한국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이 낳은 총체적 사회 위기의 비용이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위기는 “과거의 불확실성을 동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이제는 신빙성 없는 과거 질서에 대한 찬사들에서 생략되었던 염려들을 가시화하는 성찰과 잠재성 계기를 주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Bedford and Rai, 2010: 12). IMF 총재 라가르드는 지난 10월 여대생들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충격을 표현하며, 저출산→고령화→성장률하락→재정악화 '악순환 고리'에 놓여 있는 한국을 “집단적 자살사회”라고 평가한 바 있다.¹⁴⁾ 이에 세계 최고의 통계석학으로 불리는 한스 로슬링 카롤린스카 의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 있다. “저출산 극복은 인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적극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정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한국이 사라지도록 한국인들이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의지만 갖는다면 그 변화는 순식간에 온다.”¹⁵⁾ 10차 개헌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의 누적된 불평등은 여성의 몸에 각인되지만, 그 불평등의 발화자는 남성의 얼굴을 지닌다.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의 사회계약을 다시 쓸 때 여성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계약은 단순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반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성”의 목소리는 단일하지 않다. 동반연을 비롯한 일부 기독교 세력의 성평등 개헌에 대한 거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여성 집단의 집합적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지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단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다시 쓰는 사회 계약은 그 여성의 차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그 차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연대하며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성평등 개헌에서 모호함은 단지 “성(gender)”의 개념에 있지 않다. 우리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서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성운동은 그간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조직에서 평등을 실천하는 페미니즘의 윤리와 원칙을 실천해오고자 노력해왔다. 비록 그 노력이 항상 성공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더라도 그 경험을 성평등 개헌 과정에 투영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언어와 더불어 평등을 위한 정치적 문법을 후세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14) 라가르드 IMF 총재의 경고…“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 한국경제, 2017.10.24.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02481021&category=AA021>

15)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것....변화는 순식간에 온다”, 경향신문, 2017.10.04.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041332171

1. 개헌은 촛불의 연속이다.

내년 지방선거일에 예고되어 있는 제10차 개헌¹⁶⁾은 1987년 민주 항쟁의 결과였지만 졸속으로 만들어진 헌법 이후 30년 만에 다시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최초의 시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친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를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¹⁷⁾ 아래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처럼 10차 개헌의 3대 원칙은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으로 요약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만드는 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0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새로운 항해지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 그것입니다. 첫째,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온전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입니다. 분권은 대표적인 시대정신입니다. 권력의 편중과 남용을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식과 통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정세균 국회의장).¹⁸⁾

따라서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여론조사와 더불어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동성애 반대자들이 장악하여 시민의 참여와 숙의의 과정으로서의 민주 헌법의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¹⁹⁾

10차 헌법은 단순히 권력 구조의 개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에 다수의 법학자들과 시민사회 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대항해 일부는 무관심과 비참여로 고의적 지연술(deliberately slow)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제도적 개혁에서 제도의 주체는 항상 현행 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권력자들이며 그 권력자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투영되지 않은 제도 개혁은 없다. 즉, 헌법 개정의 주체들은 이미 개정의 의지와 도구

16) 문재인 정부의 개헌 의지와 더불어 국회와 국민의 여론이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 일정을 2018년 지방선거일로 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래 기사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최민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78%·의원 89% 찬성”, 중앙일보, 2017/09/24.

<http://news.joins.com/article/21965173>

17) 개헌의 역사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1952년 7월 7일 1차 개헌 (직선제-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2차 개헌 (사사오입),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4.19), 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 (소급입법),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 (5.16), 1969년 10월 21일 6차 개헌 (3선 개헌),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 (유신헌법),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 (12.12),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 (6월항쟁)으로 대부분 정권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헌법은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 항쟁의 결과물인 3.4.9차의 헌법도 소수에 의한 졸속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

18)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8.29., 10-11쪽.

19) 윤진희, “동성애 반대자 점령한 '개헌 토론회장'...국민의견 수렴 취지 무색”, 뉴시스, 2017/09/17.

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비개입 전략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방식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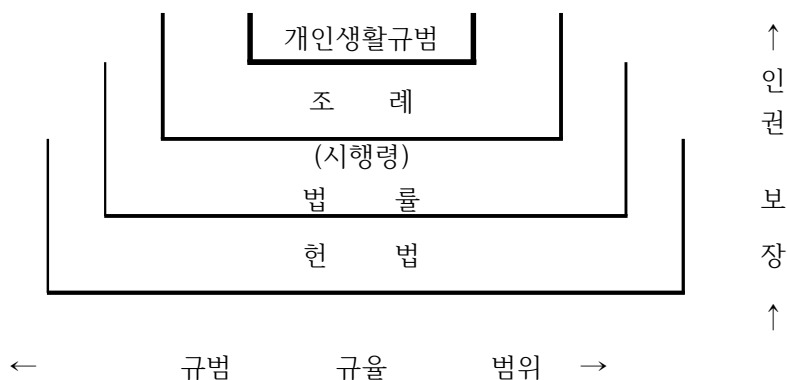
물론 그러한 전략은 많은 제도적·사법적 부작용들이 현행 헌법으로도, 즉 헌정주의에 입각하자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검찰 및 사법부의 적폐세력만 청산된다면, 지금 헌법으로도 충분히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관점 또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잠재적 충돌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의 권위에 의존하는 헌법의 조문보다는 불완전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작동이다라는 주장에서 개헌보다는 보다 평등한 대표성과 참여와 숙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제도 개혁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정치제도 개혁 없는 헌법은 무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조합 방식에 의해 힘을 더 크게 갖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즉 정치제도 개혁과 개헌과의 관계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앞서 본 개헌에 대한 기독교 세력의 오염된 관점과 횡방이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침묵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10차 개헌은 필요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를 담아내야 한다. 일차적으로 개헌의 동력은 촛불의 힘에서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차 담화문 직전에 개헌 카드를 사용한 것은, 권력 유지의 위협감을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국회의 소수 세력들이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번번이 여론의 저항에 부딪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이번 개헌이 비록 국회가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헌의 동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개헌을 위한 국민 참여의 기반은 이례적으로 만들어졌다. 오동석(2014)은 ‘인-민’들이 직접 써나가는 혁신의 법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헌법을 쓰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가 배치되기보다 조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개헌”에 주목하는 것이다. 성문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끊임 없는 혁신의 여백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시민사회는 개헌을 대한 각 분야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특히 여성계는 성평등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반동성애 개헌 세력을 저지해야 한다.

헌법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헌법은 전통으로서 지켜야할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끊임없이 갱신하는 사회계약이라는 측면에서 87년 체제로부터, 과거 권위주의적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주권자의 법이자 도덕률이자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위상을 가진다. 우선, 헌법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끊임없이 여과하여 새로 써나가는 과거 청산법이자 미래를 위한 교두보로서 후손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개헌 개입의 중요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 헌법은 국민의 법이다.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의 법인 것은 그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제2항). 헌법은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서 최고의 법규범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고(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헌법 제111조제1항 참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헌법이 부여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법규범의 위계구조는 ‘헌법 - 법률(시행령) - 조례 - 개인생활규범’의 순이지만, 인권 보장의 기준점은 그 역순이다(그림 1). 모든 하위법규범은 최고법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하므

로 법률(시행령)로써 조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이 제한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에 적합하게 법령을 해석해야 하며, 하위법규범은 상위법규범의 기준을 상회하는 한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오동석 2010).²⁰⁾ 이는 반동성애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을 저지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이 발의된 이후, 지역에서의 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역공과 여성주간 행사나 여성 지원에 대한 남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에 볼 수 있듯이 양성평등의 법적 용어 사용이 가져오는 문제점의 심각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고, 여성계도 동조하고 있는 새로운 헌법에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성문화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여성정책 및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역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림 1> 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오동석, 2010 참조)



2. 성평등 개헌이어야 한다.

발제문에도 제시된 것처럼 현행 헌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 우선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헌법개정연대를 비롯한 여성 관점의 개헌론자들은 이번 개헌이 평등권과 사회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왔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조 “법 앞에서의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은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던 반면,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던 '남녀동권' 문언은 1962년 제5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에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로 부활하였다. 그러나 헌법에서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²²⁾,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

20) 오동석. 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22(2). 2010. 12. 125-144.

21) 신필균. “[시론]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7/10/09.

<http://news.joins.com/article/21994430>

22) 신옥주(2009)는 현행의 헌법규정으로부터는 국가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해내기 어려우며, 이 중 어떤 조항도 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목적으로 하는 목적조항 또는 국가의무조항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점의 전환과 헌법 내에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김은주 2017).²³⁾

Silvia Suteu와 Ibrahim Dragi²⁴⁾는 성평등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6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성평등 헌법이야말로 진정 민주적 헌법이다. 둘째, 성평등 헌법은 여성의 역사적·경제적 비가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성평등 헌법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이해와 욕구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담을 수 있다. 넷째,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만큼, 성평등 헌법은 여성의 권한확대를 위한 법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다섯째, 공공생활과 정치적 및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할 권리는 여러 개의 국제적 규약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만큼, 법적 일관성과 통합성의 측면에서 성평등 헌법은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약속이며 규범이다. 여섯째, 갈등은 젠더 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을 악화시키며 전쟁 또는 무력 분쟁의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성평등 헌법은 분쟁 이후의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김은주 2017: 44-49에서 재인용).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젠더 없는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황정미 2017). 특히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젠더 관점의 복기는 비록 민주화 과정에서 성평등은 다수의 여성정책을 통해 부분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성별 이원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의 참여는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성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는데 이견을 제기하기 힘들다. 또한 더불어 노동 시장의 성별화된 불평등과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는 여성 빈곤을 심화하며 복지국가 전환에 있어 성평등의 관점은 정책적 성공과 더불어 민주 헌법의 의의를 살리고,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²⁵⁾ 일례로 특히 복지 제공의 기준을 가족으로 상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처럼 복지제도가 오히려 흉악한 위협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반복해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배제와 빈곤으로 몰아갔다. 이점에서 복지의 근간이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상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절실한 것이다.

성평등 개헌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중심으로 짜여 있는 복지 체제에 편입되지 못해 국가로부터 마땅한 기본권을 받지 못하는 절대 다수 인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약한 복지 기반을 확장하는 헌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함이다. 그럴 때 양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항은 1인 가구²⁶⁾가 대세를 보이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생계를 협력하는 인구에 대한 현재의 징벌 시스템을 강화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개인과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인권 가치의 문제이자 분배의 문제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가치와

남녀동권조항의 삽입을 주장한다.

신옥주. 2009. “헌법상 남녀동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55-80

23) 김은주. 2017.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1호: 43-94.

24) Silvia Suteu and Ibrahim Dragi. 2015. ABC for a Gender Sensitive Constitution, Euromed Feminist Initiative IFE-EFI, 11면.

25)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사회 114: 17-51

26) 연합뉴스. “'나 홀로 가구'가 대세...1인 가구, 520만 시대(종합)” 2016/09/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7/02000000000AKR20160907088951002.HTML>

도덕적으로 폭망한 보수정권 집권 이후 혐오로 팽배해진 한국 사회의 개조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민이지만 국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던 배제된 국민을 포함하기 위해서,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성평등 개헌이 그 답이며, 지금이 기회다.

“새로운 사회는 언제나 기존 사회의 폐허 위에 세워진다. 헌법 개정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리는 만무하지만, 헌법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누군가가 정치의 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첫 단추라면, 그리고 그것이 소수자혐오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 한 방법이라면, 지금이 기회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갇혀 사는 대신, 시민사회라는 땅에, 정치의 영역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들어갈 기회 말이다.”²⁷⁾

그를 위해서는 성평등 담론의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관념은 담론의 실질적 내용이자 정책, 사업, 철학의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한다. 담론은 관념을 전달하는 상호 과정을 의미하고 지배적인 관점이자 당연히 여겨지는 가정들을 수용하는데 기능함과 동시에 정치적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담론’의 개념은 담론 분석으로부터 합의된 개념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이 정치적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첨가하고 확장하고자 한다(Letina and Krook 2011).²⁸⁾ 다시 말해 새로운 제도의 창출과 변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론을 필요로 하며, 이 개헌의 기회에 지금까지 혼선을 빚고 있는 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일부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억압한다.

성평등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과 사람의 가치 존중인 인권의 토대이자 기본권의 강화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동성애자들이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양성평등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권익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2017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던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남연)'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며 "동성간(특히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 출산 불가능 등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 합법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①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 양성간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②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27) 박종주, “소수자 혐오와 성평등 개헌” 35호 2017년 10월 1일, <http://workers-zine.net/27579>

28) Freidenvall, Lenita and Mona Lena Krook. 2011. Discursive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Reform: Gender Quotas in Sweden and France, in Krook, M., Mackay, F. eds. 2011. *Gender, Politics and Institutions: Towards a Feminist Institutionalism*. 42-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③개정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등을 내세웠다.²⁹⁾

그러나 정희진(2017)은 아래처럼 양성평등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타자로 만드는 방식이며, 양성평등은 동성에 남성에 대한 편하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기존의 권력의 젠더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의 수사인 것이다. 양성평등의 용어는 기존의 성평등과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젠더를 어떻게 한국 사회에 토착화할 것인가의 중요한 담론적 작업을 심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정부 기구나 여성 단체의 명칭뿐 아니라 일상적 대화에서도 ‘양성평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페미니즘 그 자체이자 목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ender equality’의 의미는 성별/들 간의 평등이거나 성별 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을 뜻하는 것이지, 양성 간의 평등이 아니다. 나도 전략적 차원에서 간혹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양성평등은 여성주의의 뜻이다. 여성주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정의로서 성차별을 철폐(완화)하는 것이지,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도 역사지만, 집단과 집단이 평등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정희진, 2017: 49).

정희진이 위에 지적하듯이 전략적인 방식으로 관료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바 있으며, 이는 여성주의 논쟁의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다.

양성평등 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의 성 역할과 여성의 성 역할 위계를 비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논리라는 데 있다. “남자 못지않은 여자”, “계집애 같은 놈”,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여자” 등으로 표현되는 뿌리 깊은 인식은 남성, 여성과 관련된 제반 의미와 기호가 이미 매우 위계적임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양성평등은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추락이나 동성애자가 되는 것, 못난 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정희진 2017: 49).³⁰⁾

이러한 주장은 위의 동반연의 요구 사항에서처럼 “양성”에 대한 강조가 동성에 반대로 가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 인권 침해로 겹쳐 나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이자, 미래 지향적 국제 사회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젠더가 작동하는 근본 구조는 변함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 차원의 평등은 남성에게는 오해와 반발만을, 여성에게는 허울뿐인 평등을 약속할 뿐”이라면서, “평등의 기준이 경쟁, 승부, 부패, 우열이 작동 원리인 남성 중심의 ‘사회’인 한, 진정한 양성평등은 없다”(50, 53쪽)고 단언한다. 이와 유사하게 문지영(2012)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평등으로서 “양성평등”을 주장한다.

29) 이길웅 “‘성평등’ 헌법 개정, 사회의 기본 틀 무너뜨릴 것”, 크리스천투데이, 2017년 7월 27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2719>

30) 정희진.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민주적 평등으로서의 양성평등,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equality of men and women)’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 간에 어떤 (그러니까 의석수에 서든 교육·고용·승진 기회나 급여 수준에서든) 평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각각 자유로운 주체로서 평등한 것, 서로 평등하게 배려되고 존중받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여성정치할당제는 바로 그런 선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문지영 2012: 177-8).³¹⁾

다시 말해, 양성평등의 담론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으로 주장하는 김은주(2017)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성평등 관련 조항에서는 명확하게 헌법적 원칙으로서 실질적 성평등을 지지해야 한다. 남성과 같은 평등(equality with men)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을 언급해야 한다. 남성과 같은 평등은 남성이 규범을 대표하는 것을 가정하지만, 성평등 헌법은 후자의 가치를 담아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차별이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회에서의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담아야 한다. 적극적 조치는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집단에 대해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임용, 선출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조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는 불평등한 조건을 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 촉진을 위해 복무하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도 담아야 한다(김은주 2017: 50).

이러한 상황은 평등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현할 것인가의 철학적 정책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있어 양/성평등 담론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상을 나타낸다. 문지영은 드워킨의 논의를 빌어와, 어떤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과제에 적용한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로서의 평등권은, 어떤 재산이나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런 재산들과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이다. 그는 이것을 ‘분배적 평등’과 구별하여 ‘정치적 평등’ 혹은 ‘민주적 평등’이라고 부른다”(문지영 2012: 177). 이는 콜린스(Collins 1990)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인식론과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려와 존중, 돌봄, 책임의 가치가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 사이의 담론적 교집합과 달리, ‘양성평등’이 법률명으로 안착하면서, “여성정책이 추구해야 할 평등은 오직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은경(2016)³²⁾은 다음과 같이 일갈한 바 있다. 양성평등 정책은

31) 문지영. 2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6호): 149-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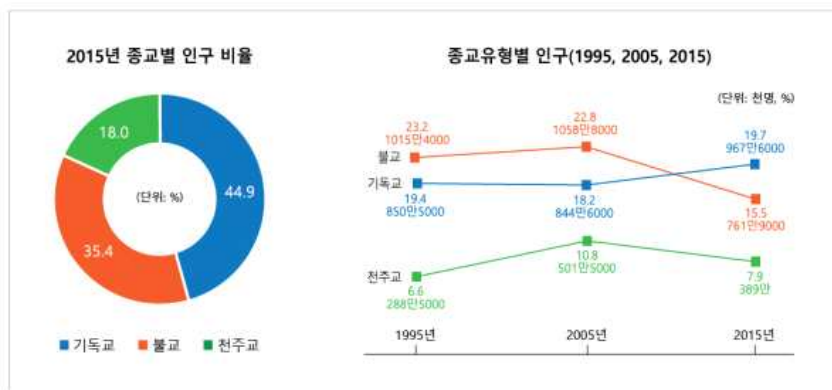
32)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1-45.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젠더와 다른 사회적 범주의 교차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는 사상되고 만다. 이는 우선 양 성 사이의 갈등과 여성 내부의 차이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여성학과 여성정책 담론의 현재적 수준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배은경, 2016: 37-38).³³⁾

더불어 현재 개헌 논의에서 기독교 세력이 만드는 성평등 대 양성평등 담론의 구도는 이러한 철학적 논쟁과 가치를 담아내기 보다는 성평등 = 동성애, 양성평등 = 동성애 반대의 지형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성평등이던 양성평등이던 그 근본적인 가치에 역행하고 있는 반동적이며 차별과 위해를 조장하는 위험적 흐름이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는 논쟁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부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 개헌은 양성평등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내용이며, 기독교의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평등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4.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를 왜 외치는가?

기독교 세력은 현재 양성평등을 기독교 세력의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2015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의 인구는 다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가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다.³⁴⁾ 기독교인들의 조직적 동성애 반대의 역사를 보면, 2007년 사학법 개정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조직적 반대, 2013년 WCC 부산 총회의 분란 이후 2014년 쿼터퍼레이드 조직적 반대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해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서만 조직적인 선동과 세력 과시를 한, 동성애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한채운 2017). 그리고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동원과 조직적인 반대가 벌어지는 현재는 종교인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³⁵⁾



33) 예컨대 2015년 6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2001년 제정, 현재는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뀜)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이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 대전시는 곧바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34) 이대웅, “한국 기독교 인구 지난 10년 사이 정말 더 많아졌나?”, 기독교일보, 2016/12/20.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0242/20161220/>

35) 리얼미터,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바로 해야” 78%, 2017/08/24.
<http://www.realmeter.net/2017/08/>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여론 단위%



고난을 극복하자는 이러한 목표 제시는 언뜻 내부 분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 - 어느 것부터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어버리는 것. 교회 세습과 담임 목사의 전횡, 횡령, 금권 선거 등 비민주적 조직 체계, 여성 목사 안수 불허 등 교회 내 성차별과 성직자들의 성폭력 문제 등을 거론할 틈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은 이런 문제들을 내부의 사소한 것으로 만든다(한채운 2017: 180).³⁶⁾

이는 기독교 내부의 위기를 ‘공동의 혐오’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정략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위기를 역설한다. 동성애를 사랑이나 삶, 정체성이 아니라 성행위로만 다루면서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와 종북 빨갱이 등 파시즘이 활용해온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에서 여성총대 비율은 1%에 불과하고, 이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여성할당제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³⁷⁾ 여성 신학자, 강남순 “근본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이며, 교회에서 여성의 위상에 대한 제고 요구에 대해 한국 기독교는 묵살해왔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사이에는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은 가부장제 가족 구조를 교화와 국가의 안정에 열쇠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에서 가부장제와 애국심과 기독교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치며, 그 깃발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논의 위에서 휘날린다. 동성애와 여성 평등은 둘 다 남성 우위의 모델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확대하면 교회와 국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잭 로저스 2015)³⁸⁾ 하기에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는 기독교의 수사는 그렇게 빨갱이의 수사를 대체하면서 “종북 게이”라는 형용 모순의 어법을 만들어내는 정략적 수사 이외에는 하등 의미가 없다.

이러한 반동성애를 통한 혐오 정치로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새누리당과 이어서 자유한국당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은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성평등 신설 조항을 동성애 개헌으로 오염시키고 왜곡하는 세력의 반동성애

36) 한채운. 2017.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정희진 엮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교양인

37) 김혜은. “여성할당제 법제화 요구” 기독교타임즈. 2016/10/19.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9>

38) 잭 로저스, 2015. 예수, 성경, 동성애, 조경희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반동성애 전략은 지난 20대 총선 김무성 대표에 의해서도 적극 차용되었는데, 당시 아래와 같은 새누리당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³⁹⁾ 그러나 흥미롭게도 자유한국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소속 정당의 윤리강령 위반한 것이다.⁴⁰⁾

제20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6. 성평등은 전지구적인 규범이자 미래 한국의 기반이다.

미국에서 2015년 동성혼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 확장되어온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거둔 승리’라는 관점으로 동성혼 권리를 조명했다. 인권의 역사에서 노예해방이나 여성참정권과 나란히 놓일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동성혼의 인정은 사실 아래 공화당 지지자인 앤드류 설리번이 주장하듯, 신성한 결혼의 가치에 대한 평등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통 가족과 결혼의 가치를 훼손하기보다 새롭게 갱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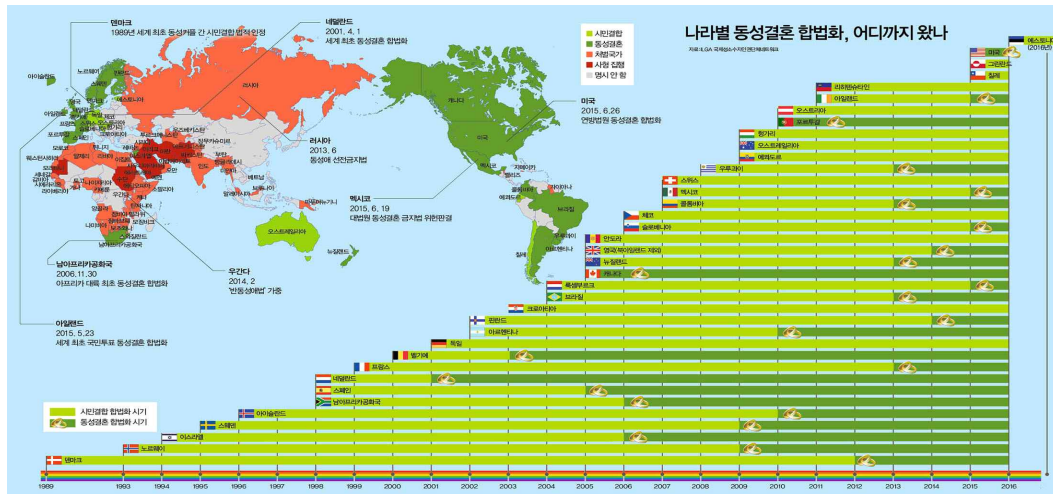
앤드류 설리번이라는 저자는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동성혼에 대한 1989년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우리[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평범해 보일 것이고, 우리가 더 사람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평등은 명백하게 더 중요하게 보일 것이다.”⁴¹⁾ 즉,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서도 현재 붕괴하고 있는 가족의 가치를 되살릴 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세대간 달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서 동성혼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의 개헌은 미래 세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서 인권 확대의 측면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의 군사법원이 군형법 92조 6을 근거로 동성애자 대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같은 날, 대만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다. 그 어떤 누구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이다.

39) 김세옥, “성소수자 혐오 김무성, 새누리당 윤리강령 위반.” 피디저널. 2016/04/11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75>

40) 강병진, “자유한국당은 사실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의지를 가진 정당이다” 허핑턴포스트. 2017/08/23.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22/story_n_17805420.html

41) Molly Ball, How Gay Marriage Became a Constitutional Right: The untold story of the improbable campaign that finally tipped the U.S. Supreme Court, The Atlantic, 2015년 7월 1일,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5/07/gay-marriage-supreme-court-politics-activism/397052/>

42) 천관율, “반대파 진지 조용히 무너뜨린 오바마의 전략” 시사인, 제408호, 2015년 7월 13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3813>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을 인정하는 절대 다수의 나라가 한국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던 서구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성서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제기한다. 더 나아가 2017년 10월 9일 한국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고(22, 23 문단), 특히 차별금지법은 18개월 내에 이행을 보고해야 하는 시급한 의제 3가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74 문단)

차별금지법 입법화⁴³⁾

22.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수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특히 해당국의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기초로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이는 해당국 국민 중 차별에 대한 금지 기반에 대한 합의를 만들려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23.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국가가 인간적 존중을 보호하고 인권의 동등한 향유에 대한 국민과 입법자들의 의식을 고양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해당국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 반차별에 대한 2009년 20번 초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74. 위원회가 후속작업의 절차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해당국은 위와 같은 내리는 관찰의 결론을 수용하고 위원회의 문단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41(노동조합 권리) 등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실행에 대한 정보를 18개월 이내에 제공한다.

43)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2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delay in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especiall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only on the grounds of sex, religion and social status.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taken sufficiently proactive and effective steps to build consensus around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mong the population (art. 2(2)).
23. The Committee reiterates the urgency of adop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ises awareness among the population and the legislators about the harmful effect of discrimin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equal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fers the State party to its general comment No. 20 (2009) on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74.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n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provide, within 18 months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in paragraphs 18 (a) (business and human rights), 23 (non-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41 (trade union rights) above.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지금 반동성애 목소리는 이미 기독교 내부에서는 취약한 정당성에 흔들리고 있으며,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고 한국 극우 정치세력이 와해하면서 교인들이 보수 목사들의 행보에 동조를 하지 않게 됐다. 이런 점 때문에 개신교 보수진영에서 더 강하게 동성애를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보수 개신교 장로급 교인 몇몇을 개인적으로 인터뷰해보니 ‘목사의 반동성애 설교에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 동성애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⁴⁴⁾

이 토론문은 아래 여성 신학자들의 성명서처럼 성평등 개헌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마친다.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의 친구, 교회의 동반자" -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에 대한 여성신학자들의 입장>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2차 총회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헌법 개정 결의안을 비롯한 각 교단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양성과 차이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들로써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재의 다양성과 차이는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존중을 받지 못한 채 혐오 대상으로 차별과 고통 속에 살았던 죄인들, 과부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바로 이들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정결과 부정, 거룩과 세속의 폭력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으로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던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빛 아래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참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폭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생명창조 역사의 파트너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의 친구, 교회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교회법이나 교단의 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순하고도 준엄한 명령에 있습니다. 다수의 지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의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그 가운데서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없으며, '평화'라는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헌법 개정 결의안을 통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44) 김양진. "개신교 보수세력 '종북' 안 먹히자 '반동성애' 들고나온 것". 한겨레 2017/09/28.

주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법이 하나님 사랑의 법과 사역보다 더 우선되지 않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교회여성들과 여성신학자, 여성목회자들의 분명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한다.

둘째, 성지향성은 찬성/반대 혹은 옹호/비난의 사안이 아님을 확인한다.

셋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정을 이슈화하여 교권과 보수 정치의 세력을 재생산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넷째, 어떠한 사람도 성소수자의 인권과 하나님의 자녀 됨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교회, 교단,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것에 반대한다.

다섯째,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이해와 진지한 논의를 요청한다.

2017년 9월 28일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⁴⁵⁾

45) 남지현, "'빨갱이' 대신 동성애 혐오로 교회 결집"

[현장] 기독교계 성소수자 차별 대응 긴급간담회, 오마이뉴스, 2017년 10월 2일



여성이 세상을 연다_성평등 開한 신문

해방과 대한민국의 탄생 이후 줄곧 여성은 이등 시민이었다. 재헌헌법에 동등한 투표권과 가족 내 남녀동권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의 안보 논리와 경제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은 보장되지 못했다. 여성은 저임금 노동의 산업역군이자 비공식 경제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무급의 돌봄 노동의 제공자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국가의 발전을 지탱해 지원하는 주체였으나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로 관리되었고 여성은 어머니로서 가족에 귀속되는 존재로 국가에 의해 호명되었다.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삭제되고, 여성의 교육적 성취는 부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조직은 여전히 여성을 (잠재적) 어머니와 무급의 돌봄 제공자로 간주하며, 여성의 노동은 언제든 신축 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끊임없이 훼손당하고 협박당했으며, 여성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외면 당해왔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참여는 도시락을 싸주고 심리적인 지원군 이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독점적 정치권력 기구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며, 기껏 그들의 편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했다. 여성은 집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상시적인 폭력과 회한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남성성에 의해 독점된 헌법 기구에 의해 여성의 법적 주체성은 시험되고 제한되었다.

지난 헌정사에서 여성은 전무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체는 항상 모두 남성이었다. 헌법에서 여성은 모순적으로 재현되었으며, 그 모순은 여성의 권리 보장을 비껴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열거된 헌법 제11조 1항은 제32조 2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쇄된다. 여성의 복지와 권익은 여성들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에 기초해 인정되기보다는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임으로써 여성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주체가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혜자 범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여성의 모성조차 보호하지 않았다. 모성 수행에 포함되는 출산과 양육은 여성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대신 모성을 빌미로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당하는 차별도 정당화되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가정의 터울 안에 갇혀, 가족 내의 불평등,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성의 존엄성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37.2%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 빈곤율도 같은 해 기준 47.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 사회의 누적된 불평등은 여성의 몸에 각인된다. 백년대계의 사회계약인 헌법은 여성의 눈과 목소리로 쓰여져야 한다. 지금까지 비가시화되었던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헌법에 반영시켜, 한국 헌정사에서 여성을 온전한 법적 주체로 승격시켜야 한다. 헌법 개정이 누적된 불평등을 일거에 해소할 리 만무하다. 그러나 한 정치공동체의 최고법이자 공통의 가치를 제시하는 헌법에 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을 내장시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타파하는 역사적 정점다리가 될 것이다. 정부 수립 70년, 재헌 70년을 맞아 이휘질 10차 헌법 개정이 "성평등 개헌"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법적 주체로서 여성 시민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여성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기획이다. 남성이 독점한 국가가 시혜를 베풀 것이라고 행여나 기대하지 말라.

연대정치연구소 여·세·연
Korea Women's Studies Research Institute



대한민국 성평등 개헌을 위한 공동행동



이번 10차 헌법 개정은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최초의 시민 참여와
숙의의 과정을 거친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의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

현재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는
특정 집단의 목소리가 점령했습니다

...
약 4일 전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약 5일 전

동성애 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폐지!!!!!!

...
약 2일 전

양성평등삭제하는 성평등은 개인.가정,사회,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개헌입니다.
하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다.

...
약 5일 전

동성애 동성혼 반대, 낙태법 폐지반대, 차별금지법 폐지!

...
약 5일 전

동성애와동성혼 낙태폐지법 절대반대!!!

...
약 2일 전

동성애 동성혼 낙태법 폐지 성평등 조항을 적극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헌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일부 집단은
‘성평등’ 용어에 반대하고
동성애 관련 질의나 의견을 되풀이해
토론회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국민 양꼬' 없는 '헌법 쟁쟁'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2017.08.29)



사진은 <성평등 NO> 피켓을 든 동반연(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기자회견 / 기독일보

김진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기독교 세력의 토론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동성애, 국회보다 법원에서 먼저 합법화 될 수도" (2017.08.24)

"9월부터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각 지역별로 마련되는데,
여기에 참석해 그런 우려를 적극 표명한다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다양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 개헌특위 위원장 이주영 의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 헌법을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평등 개헌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 SKT LTE

오후 3:2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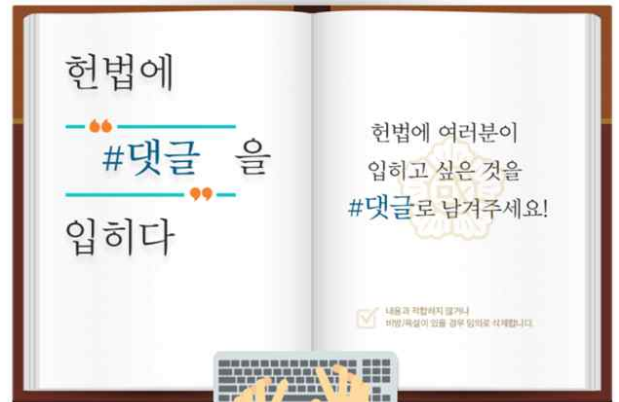
n-opinion.kr



① 개헌특위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www.n-opinion.kr>)

헌법에
당신의 [오늘]을
입혀주세요

② 스크롤을 아래로 내린다



③ 성평등 헌법을 촉구하는 글을 쓴다

SNS로 로그인하기 ☒

소셜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글작성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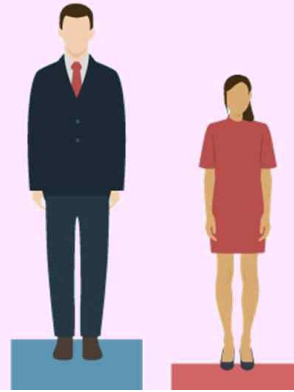
<대성공 1회차 캠페인>

- ① 개헌특위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www.n-opinion.kr>)
- ②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고 SNS 로그인한다.
- ③ 성평등 헌법을 촉구하는 글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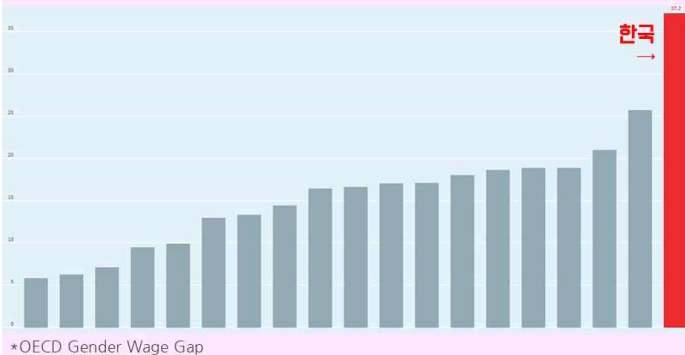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0.650점으로
전세계 **118위**입니다.

* 1은 완전 평등 0은 완전 불평등 / 세계평균 0.680



그리고
한국의 성격차지수 순위는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5위 / 145
2016년 116위 / 144
2017년 118위 /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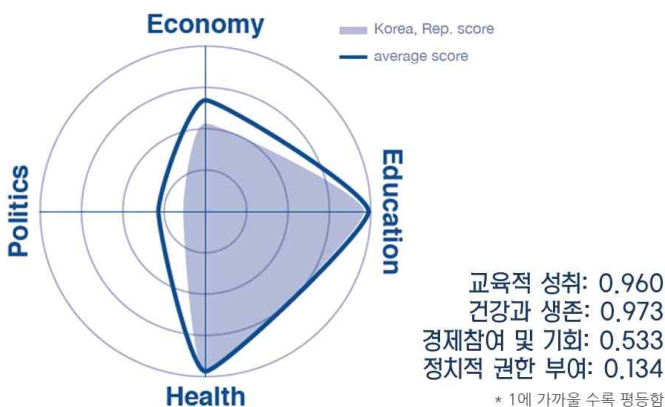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7.2%** 적게 받습니다.

성격차를 줄이려면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
가족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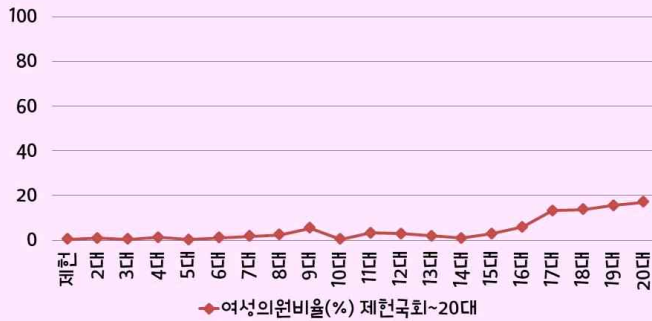


한국의 여성은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과 달리
경제 참여 및 기회와 정치적 권한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여성의원은 총 51명으로
전체 의석수의 **17%**에 불과하고, 이 수치는
전세계 **116위**입니다.*
(지역구 26명(10.2%), 비례대표
25명(53.1%))

*국제의원연맹(IPU)



2002년 정당법 개정으로 할당제*가 도입이 되어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비율이 대폭 상승**한 후 증가폭은 4%p에 불과하여, 남성의 과잉대표성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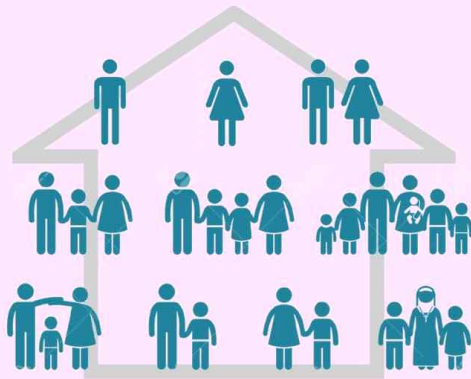
*16대에는 비례대표의 30%, 17대부터 비례대표의 50%를 여성후보에게 할당
 ** 16대 5.9% → 17대 13.3%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가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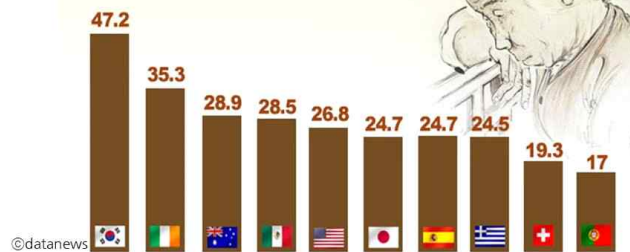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고, 그 중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비율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혼가구는 기혼가구보다 세금을 더 내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연합뉴스 “독신이 두 자녀 가구보다 더 내는 ‘싱글세’ 79만원” (2016.11.2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년 여성 빈곤율

출처: 알리안츠그룹 / 단위: %



여성 1인 가구 중 여성 노인 가구의 비율이 크고(46.8%)* 노인 여성 빈곤율은 47.2%입니다.

여성 가구주의 평균 상대빈곤 경험은 2.24회로 남성 가구주의 평균 0.67회의 3배 이상**으로, 여성/1인가구/노인일 수록 빈곤에 취약합니다.

*한겨레 '노인 1인가구' 25년새 13배 늘어(2016.02.17)
 **JTBC 4가구 중 1가구, 절대빈곤층 '돌락날락'(2012.01.30)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얹히지 않은 동거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사회복지, 주거, 의료, 상속 등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인에 기초한 가족 패러다임은 다수의 권익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법적 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갑자기 나타난 조카에게 모든 상속권을 빼앗겼어요." *



"3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법적 가족이 아니라고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가 없대요." **



*한겨레 법률로 동거가족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기대하시라(2014.09.12)
 **한겨레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2014.10.29)

개인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OECD 1990년~2016년 출생률 통계

정부가 지난 10년간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2017년 출산율은 1.17명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 1.6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자녀 양육비,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혼여성은 기혼남성과 달리 독박육아에 시달리거나, '일-가정 균형'을 만드는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해소하고 모두가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젠더정책연구소 여.세.연

헌법 15조를 신설하라!



- 1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가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2 국가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 3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4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5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15조를 신설하라!

1. 국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가족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선출직과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남녀가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3.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4. 국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